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세부화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4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명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2. 17.
3. 회 부 일: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명확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⑦ -----제6항까지에서-----</u> ----- -----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 ----- ----- ----- -----

현행	개정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 9. (생략) ② ~ ⑩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 -----. 1. 제28조의8제1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의8제6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15. ~ 27. (생략) ③ ~ ⑤ (생략)	14의2. 제28조의8제6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자 15.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나 법률 또는 조약상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 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와의 동등성 인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공개 정보 항목 등을 알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법 제28조의8 제1항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 국외 이전에 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⑤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이하 ‘고지사항’)를 알려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28조의8제2항 및 제3항2)).

□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³⁾.

□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KBS, 정부, 테무에 13억 과징금...“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로”, 2025. 5. 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4511&ref=A>)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긍정적임.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제3자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 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⁵⁾,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는 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음⁶⁾.

○ 이러한 동의 방법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

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 9. 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6)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 이전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현행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도 정보주체가 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구분 동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알리면서 이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미만)을 부과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고지 불명확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살펴보면,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 및 피해 등을 예방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동의 등에 대한 현행 제재수준과의 비례성을 감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외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법 제30조) 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사업자 중심의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와 함께,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4